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 운영조례

의안 번호	687
----------	-----

제출년월일 : 2001.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 발생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 되는등 제2의 환경오염문제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 하여
-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잔재를 매립하는 1일 200톤(100톤/일×2기) 소각처리용량 규모에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에 지역명이나 소각장명, 매립장명 등을 표기 할 경우 주민정서상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을 “환경관리센터”로 정하여 혐오감을 최소화 하였음(안 제2조).
- 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설치사업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지정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규정하였고,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는 매립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최종 매립토록 규정하였음(안 제4조).

다.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치·운영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시 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음(안 제5조).

라.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하여 시설운영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였음(안 제5조).

마. 환경관리센터시설 사용자를 폐기물처리업허가 받은자로 제한하고,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 철저히 통제토록 하였고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 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7조).

바.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9조).

사.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허가 취소 및 차량 폐차, 지정폐기물, 폭발성 폐기물 등을 반입할 경우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과 카드를 회수토록 하였음(안 제9조).

아.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위촉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를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환경관리센터의 적정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안 제10조).

자. 환경관리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에 설치·운전·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위탁기관을 확대하였음(안 제11조).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이하“환경관리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②환경관리센터의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3.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개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등) ①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②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 고형화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등) ①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소각시설은 법 제30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환경관리센터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30일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업무)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부대시설의 관리
8. 기타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등) ①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수 있는자(이하“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카드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 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량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반입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원”이라 한다)을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4.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 및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허가업체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개시일 30일 이내에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91
입·안 자	환경보호과장	박 철 순
	환경시설담당	박 응 준
	담 당 자	김 경 호